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행위수가간 불균형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은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을 고시(보건복지부 제2017-92호)하고, 7월 1일부터 5,307개의 의료 행위의 상대가치 점수가 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본 개정은 지난 2008년 개편 이후 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5개 의료행위 유형 간 상대가치 점수 불균형 조정을 통한 균형성 확보를 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높은 검체·영상검사 분야의 점수는 인하하고, 수술·처치·기능검사 분야의 점수는 인상하여 건강보험 시스템의 효율화와 더불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의 접근을 높여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번 개편에 따른 검체검사 수가인하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검체검사질 가산율 및 적용기준을 신설하고 진단검사의학과 4% 수가 가산 조항에 병원급과 의원급을 구분하여 의원급 교육이수기관을 별도로 신설하였으며 등급별(1~5등급) 점수와 기준을 병원급에 비해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특히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개정 사항에는 신생아 및 소아에 대한 가산 점수와 가산율이 대폭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소아의 기준이 보다 세분화되어 기본진료료의 경우 종전 만 6세 미만에 대해 동일한 가산점 (9.03점)이 부여된 반면, 현행은 만 1세 미만에 대해 별도의 가산점 (26.45점)이 신설되고, 만 1세 이상~만 6세 미만에 대한 가산점 (10.89점)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처치 및 수술의 경우에는 60% 가산율이 100%로 인상되는 등 금번 개편을 통해 신생아 및 소아에 대한 행위수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개정은 급격한 상대가치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25%씩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7-9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바로가기](#)

사이넥스 서비스

사이넥스는 의료기기를 비롯한 보건의료제품의 시장진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영역]

- 의료기기 수입/제조 품목허가
- 해외 인증
- 보험등재 / 신의료기술평가
- 제조 품질시스템 구축 (GMP 적합인정)
- 임상시험 (CRO)
- 시장 조사

담당자 연락처

1. 의료기기 보험등재, 신의료기술평가 문의 : 차지민 차장 (jmcha@synex.co.kr)
2. 기타 문의: 이성민 대리 (smlee@synex.co.kr)

more about Synex >>